

2016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16년 2월 확정·통보되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규정(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 등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재난본부 총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721,734	715,714	6,020	0.8%
세 외 수 입	1,632	1,632	0	0.0%
국고보조금 등	2,461	2,441	20	0.8%
보전수입 등	2,901	2,901	0	0.0%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714,740	708,740	6,000	0.8%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51,675	251,675	0	0.0%
소방안전교부세	21,964	15,964	6,000	37.6%
일반회계전입금	441,101	441,101	0	0.0%

2)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436,474	1,424,454	12,020	0.8%
행정운영경비	534,541	534,541	0	0.0%
재무활동	714,859	708,859	6,000	0.8%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14,740	708,740	6,000	0.8%
국고보조금반납	119	119	0	0.0%
정책사업비	186,565	180,545	6,020	3.3%
예비비	509	509	0	0.0%

나. 회계별 사업내역

- 1) 일반회계: 해당 없음
- 2) 소방안전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설명서
	총계	13,599	7,439	6,020		
계속사업	소방차량 대폐차	13,193	7,053	6,000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인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필요	P.47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406	386	20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이후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16.10.19 지진방재종합훈련 추진경비로 집행함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 필요	P.477

IV. 검토의견

1. 개요

1) 소방안전특별회계

-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7,217억 34백만 원임.
-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1조 4,364억 74백만 원임.

- 금회 소방안전특별회계 추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57억 14백만원 대비 0.8% 증액(60억 2천만 원)된 7,217억 34백만 원이며,
- 세출예산(총계예산¹⁾ 기준)의 경우 기정예산 1조 4,244억 54백만원 대비 0.8% 증액(120억 2천만 원)된 1조 4,364억 74백만원임.
- 금회 추정편성 2개 사업은 모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 중 ‘소방차량 대폐차’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회계연도 중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1) 소방차량 대폐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193,000	7,053,000	6,000,000	주력소방차 교체 27대 (펌프20, 물탱크 7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93,000	7,053,000	6,000,000	- 펌프차(중형 5톤트럭) = 20대 × 230백만원 - 물탱크차(중형 5톤트럭) = 7대 × 200백만원

1)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 동 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소방현장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담보되지 않는 노후 소방차량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적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70억 53백만원 대비 60억원(85%) 증가한 131억 93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안 편성 당시 2015년 서울시 교부액을 기준으로 21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에 80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²⁾에 따라 총액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에 60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말 기준으로 주요 소방차량별 내용연수 및 보유현황에서 내용연수 경과 비율을 살펴보면, 구조공작차 25%, 구급차 21.2%, 화학차 20%, 물탱크차 19.8%, 펌프차 16.7% 순으로 노후율을 보이고 있으며([표] 참조),

[표] 주요 소방차량별 내용연수 및 보유현황

차량명	내용연수	보유수량 (‘16년 현재 기준)	내용연수 경과수량 (‘16년말 기준)	내용연수 경과비율
펌 프 차	10년	120	20	16.7%
물 탱 크 차	10년	96	19	19.8%
화 학 차	10년	25	5	20.0%
고 가 사 다 리 차	12년	25	4	16.0%
굴 절 사 다 리 차	12년	26	-	-
구 조 공 작 차	8년	24	6	25.0%
구 조 버 스	8년	26	3	11.5%
구 급 차	5년	151	32	21.2%
지 휘 차	8년	26	4	15.4%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우선적으로 물탱크차와 펌프차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그 사유는 이들 장비의 경우 화재현장에서 고압의 소방용수를 차량의 자체 엔진동력에 의존하여 신속히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펌프출력과 장시간 가동에 따른 피로도 누적을 감안할 때 교체가 시급하다는 입장임.

[표] 소방펌프차 및 물탱크차 제원

차 명	사 진	제 원
소방펌프차		크 기 : 전장 6.4m× 폭 2.1m × 높이 2.5m (소형 기준) 배기량 : 3,933CC 소방용수 탑재량 : 1,500리터 내외
물탱크차		크 기 : 전장 7.4m× 폭 2.4m × 높이 2.9m (소형 기준) 배기량 : 6,299CC 소방용수 탑재량 : 4,000리터 내외

- 그러나, 소방차량 교체는 주문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부터 제작·납품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명시이월 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임.
-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시·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의 정확한 확정 시·도의 예산편성 시기 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차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 이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금년 2월에 소방안전교부금액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추정편성이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 할 것임.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06,240	386,240	20,000	
사 무 관 리 비	260,800	240,800	20,000	- 지진 긴급구조종합훈련
포 상 금	6,000	6,00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39,440	139,440		

- 동 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결과('16.5.3)에 따라 서울시가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른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3억 86백만원 대비 2천만원(5.1%) 증가한 4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6.10.19일 지진방재종합훈련을 개최하면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훈련경비로 이미 집행하였고, 금회 추정에는 사후적으로 편성한 것임.

[표] 2016년 지진방재종합훈련 실시 개요

- 일 시 : 2016. 10. 19(수) 14:00 ~ 18:00시(4시간)
- 장 소 : 고덕 3단지아파트 재건축지역(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 훈련참여 : 서울시, 수방사, 서울경찰청 등 49개 기관
- 훈련진행 : 시민대피훈련 → 현장대응훈련
- 동원현황 : 인원 5,230명 / 헬기 12대 / 차량 340대 / 장비 1,281종

- 이러한 원인은,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예산성립 후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제도(예산총칙3))에 의거 선 집행 후 사후보고 하였으나,
- 지난해 의회의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예산총칙 중 간주처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4)에 근거하여 집행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성립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후 같은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따라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포상금 형태로 교부한 2천만원은 기 집행한 지진종합방재훈련 비용으로 사용토록 당초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 향후, 이처럼 용도 지정이 명확치 않은 교부금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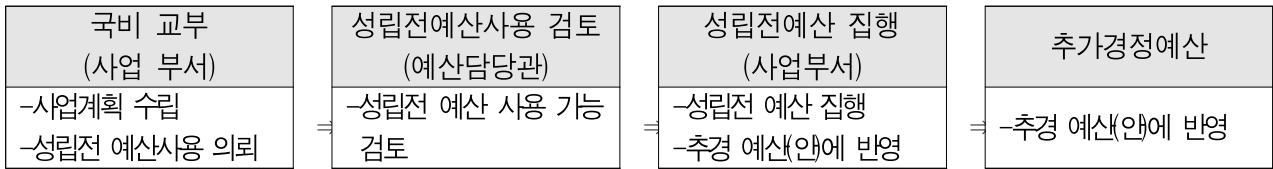
3)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4)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추경편성 이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성립전 예산 집행지침('16.4.26, 예산담당관)

[그림 1] 성립전 예산 집행 절차

3. 명시이월 ([붙임] 조서 참조)

- 금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항은 총 4개 사업에 총 233억 6천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붙임 1]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소방행정타운 건립’의 경우 당초 예산액 358억 68백만원 중 153억 22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 이는 설계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전 사전이행절차(계약심위원회, 일상감사 등)기간 소요로 공사착공이 6개월간 지연(‘15.12월→’16년 5월)됨에 따른 것으로 공사착공 준비부족에 의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 ‘금천소방서 신설’의 경우도, 편성예산(4억 35백만원) 대부분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토지보상 이행절차 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붙임] 1.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붙임 1]

명시이월사업조서

○ 소방안전특별회계(4건, 23,360,64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61,968,373	23,360,645	
1	소방행정타운 건립	계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비	35,868,706	15,322,045	'16년 연초 착공 계획하여 '16년 소요 공 사비를 편성하였으나, 공사계약 전 사전절 차이행(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 등) 기간 소요로 인해 '16.5.18. 공사 착공함 ⇒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금년 공사비 중 153억원은 '17년도로 이월 - 공사기간 : 2016. 5.~2018. 5.
		시설비 (401-01)		35,246,606	14,732,045	
		감리비 (401-02)		590,000	590,000	
		시설부대비 (401-03)		32,100	0	
2	성 동 소 방 서 신설	계	건축공사 공정율에 따른 기계설비 설치 비 이월	12,611,667	1,615,000	태양광 설비 등 관급자재 설치가 공사 진행에 따른 공종별 추진과 맞물려 2개 년에 걸쳐 진행 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에 일부 기계설비 설치가 어려워 '17 년도로 이월 - 공사기간 : 2015.12.~2017. 5.
		시설비 (401-01)		11,820,000	1,387,000	
		감리비 (401-02)		780,000	228,000	
		시설부대비 (401-03)		11,667	0	
3	금 천 소 방 서 신설	계	금천소방서 신설관 련 용역비	435,000	423,600	신설부지(사유지) 토지주와 협의 지연 등 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토지보상 이행절차 용역 소요예산을 '17년도로 이 월 -도시계획 용역기간 : '16.10.~'17. 6. -토지보상 용역기간 : '17. 7~'18. 6.
		시설비 (401-01)		435,000	423,600	
4	소방차량 대 폐차	계	노후 소방차량 교체 (펌프차 20대, 물탱 크차 7)	13,053,000	6,000,000	소방안전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른 추가경 정예산편성 및 제작기간(10개월) 부족으 로 '17년도 이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3,053,000	6,000,000	